##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

[시행 2023. 8. 1.] [조례 제1928호, 2023. 7. 11., 제정]

전라남도 여수시(교통과), 061-659-4125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어르신"이란 여수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.
- 2. "버스"란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1호가목·나목·다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, 농어촌버스운 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- 3. "운송사업자"란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 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교통복지카드"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.
- 5. "지원요금"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.
- 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 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.

## 제5조(이용방법)

-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.
-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,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사람이 그비용을 부담한다.
- ③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 한다.
- **제6조(지원중단)**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,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  - 1. 사망한 경우
  - 2. 다른 시·군·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
 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
  - 4.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
  - 5.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 제7조(지원요금의 청구)

-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지원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 제8조(자료요구 등)

-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읍·면·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·군·구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 (2023. 7. 11. 조례 제1928호)

이 조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